

## 원자력법개정(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 1. 개정사유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원자력위원회등 개편
- 원자력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규제규정의 대폭정비·완화

### 2. 개정(안)주요골자

가. 원자력위원회의 개편(제4조의2, 제5조)

나. 대통령령에 기술된 기술기준을 부령에 위임하여 기술진보에 따른 최신 기술의 반영이 용이하도록 체계정립(제12조, 제22조, 제44조, 제58조, 제77조, 제87조, 제90조의5)

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하여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 신설(제37조내지 제42조)

마. 원전 가동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기적인 안전성평가를 원자로 운영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마련(제29조의2)

바. 신규개발하는 원자로를 정식 인허가 신청전에 규제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검토 받을수 있는 사전안전성검토제도도입(제104조의8)

사.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실적이 우수한 RI이용기관에 대한 규제감면제도를 도입하며, 방사선기기의 승인·검사제도 신설(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아. 민방위기본계획에 의하여 수행하던 전국방사능 감시 및 평가기능을 원자력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방사능 측정소 설치·운영 근거마련(제104조의7)

## 구인·구직 코너

성명코드	나이	성별	자 격 증	학 력	희망직종	희망근무지역
8-7-1	남	27	일반	대졸	직종무관	전국
8-7-2	남	24	방사선사, 일반	초대졸	직종무관	전국
8-7-3	남	26	비파괴기사1, 일반	대졸	직종무관	전국
8-7-4	남	25	일반, 건설조종사(지게차)면허	대졸	직종무관	전국
8-7-5	남	31	일반, 비파괴기사1	대졸	직종무관	전국
8-7-6	남	28	일반	대졸	직종무관	전국
8-7-7	남	30	일반	대졸	직종무관	전국
8-7-8	남	25	일반	대졸	직종무관	전국
8-7-9	남	25	일반	대졸	직종무관	전국
8-7-10	남	25	일반	대졸	직종무관	전국
8-7-11	남	27	일반, 방사선사	초대졸	직종무관	전국
8-7-12	남	25	일반	대졸	직종무관	전국
8-7-13	남	25	일반, 비파괴기사2	대졸	직종무관	전국
8-7-14	남	25	일반	대졸	직종무관	전국
8-7-15	남	25	일반, 비파괴기사2	초대졸	직종무관	전국
8-7-16	남	31	일반	대졸	직종무관	전국
8-7-17	남	26	일반, RI기사1급	대졸	직종무관	전국
8-7-18	남	27	일반, 비파괴기사1	대졸	직종무관	경기,충청